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54
----------	------------

제안년월일 : 2023년 12월 19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안 제2조 신설에 따라 후단의 조 번호체계가 변경되었음에도, [별표 1]과 [별표 2]의 제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 번호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어 변경된 조 번호 체계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별표 1]과 [별표 2]의 제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 번호를 수정함.(안 [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 관련)”을 “(제3조 관련)”으로 한다.

안 [별표 2]의 제목 중 “(제4조제2항 관련)”을 “(제5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제2조 관련) (이하 생략)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제2조 관련)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1] ----- -----(제3조 관련) (이하 개정안과 같음)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2항 관련) (이하 생략)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2항 관련)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2] ----- -----(제5조제2항 관련) (이하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1항 중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 관련)”을 “(제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조제2항 관련)”을 “(제5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제2조(협력체계 구축)</u>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u>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p>
<p><u>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u> ① 「<u>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u>제17조제4항</u>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략)</p>	<p><u>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u> ① <u>법 제17조제4항</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u> ① ~ ② (생략)</p>	<p><u>제4조(불 피움 등의 신고)</u>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u> ① ~ ③ (생략)</p> <p>[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u>제2조 관련</u>) (이하 생략)</p> <p>[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u>제4조 제2항 관련</u>) (이하 생략)</p>	<p><u>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p> <p>[별표 1] ----- -----(<u>제3조 관련</u>) (이하 현행과 같음)</p> <p>[별표 2] -----(<u>제5조 제2항 관련</u>) (이하 현행과 같음)</p>